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23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하영제·서일준·서정숙

박형수 · 김태호 · 박성민

김용판 · 조명희 · 이달곤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 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융자에 관한 사항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 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 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규정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5(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출자금 · 예탁금 또는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69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 총 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 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 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84조제2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69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의3. 제69조의11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u><신 설></u> <u><</u> 신 설>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항공산업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 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 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감독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① 조합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운영에 필요한 보증
- 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투자를 포함한다)
-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 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 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 설>

도 또한 같다.

- ③ 조합의 사업 범위·내용 등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5(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 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 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또 는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원

<신 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 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 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 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 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제69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 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 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 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 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 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0. (생략)

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
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
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
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
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
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
을 권고・요구하거나 그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1. ~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20의2. 제69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u><신 설></u>	20의3. 제69조의11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